

의안번호	2207639
의 퇴 인	임호선의원
회 답 일	2025.2.13.
추계번호	25D0351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)제1항	-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,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, 그 법정대리인, 변호사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의 신청에 의하여 제19조제1항¹⁾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- 개정안은 ‘재발’뿐만 아니라 ‘발생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, 이 긴급임시조치에 같은 조 제7호 ‘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’를 추가하도록 규정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3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)제1항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- 1) 제19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)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이하 "임시조치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3.24.>
1.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(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
 2.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,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 3.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 - 4.~6. (생략)
 7.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

2. 상세 사유

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(안 제13조제1항)

-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에 ‘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’를 추가하고, ‘재발’뿐만 아니라 ‘발생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, 유치장·구치소의 운영비 또는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행법에 따라 결정된 ‘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’ 건수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고, 개정안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실시하게 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건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참고로, 대법원에 따르면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결정 건수를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안나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